

# 국무총리행정정조정실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 (02) 720-2014 / 전송 737-0109

문서번호 국행일 01100- 22

시행일자 94. 5. 27 (보존연한: 년)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취급		행조실장	국무총리
보존			
조정관	기동		
심의관	이기현		
서기관	한민기		
기안자	강태옥		
			협조

제목 전. 현직공무원 단체 운영개선에 관한 지시 (국무총리지시 제 1994-11 호)

현재 정부내 각급기관별로 "전. 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회원의 후생복리 증진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상조회 및 공제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대부분은 본래의 설립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단체의 경우 설립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 해당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거나 퇴직급여 명목의 수익금 배분등에 치중하는등으로 인해 일반국민으로 부터 비판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들이 개혁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전. 현직 공무원 단체의 운영개선에 관해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이들 단체의 지도. 감독을 맡고있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단체가 설립목적에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 현직 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무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의 운영을 금지함. 다만 주무감독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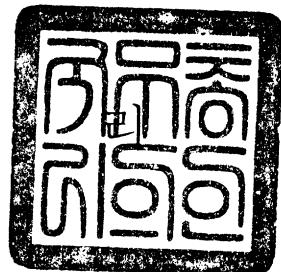
2. 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며, 개별법률에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삭제하도록 함.

3.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해서는 아니되며 퇴직급여 또는 수의 배분적 성격의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됨. 다만, 본 지시일 현재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정한 방법의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4. 주무감독기관의 장은 소관공무원 친목단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1994. 7. 31까지  
본 지침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총무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기일내에 조치가 곤란한 사항은 향후의 조치일정계획을 첨부하도록 함.

5. 총무처 장관은 동 조치결과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1994. 8. 31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 바람. 끝.

# 국무총



수신처 : 가(07~33), 가(40~54), 나(01)